

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797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8. 12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정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도모
-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불부합 조항 등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- 가. 적극적인 시정참여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(안 제14조)
- 나. 근거법령 개정사항 반영(안 제8조제1항)
- 다. 근거법령 불부합 조항 정비(안 제2조제4호, 제12조제2항, 제1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개 정 조 례 안 : **【붙임 1】**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**【붙임 2】**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**【붙임 3】**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 - 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**【붙임 4】**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**【붙임 5】**
 - 입법예고 : 2025. 6. 25. ~ 2025. 7. 15. 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**【붙임 6】**
 - 2) 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7】**

【붙임 1】

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안산시”로 하고, “지역정보화”를 “지능정보화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”를 “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”로 “시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”을 “이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“비밀번호”라 함은”을 ““비밀번호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“전자민원창구”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인터넷시스템 구축.운영)”을 “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생활.산업.관광.문화”를 “생활·산업·관광·문화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국내.외”를 “국내·외”

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, 홈페이지 관리부서,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.운영”을 “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(이하 “시스템운영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관리부서(이하 “관리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”으로 하며, “개발.유지 보수 및 운영”을 “개발·유지 관리 및 운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중 “시장”을 “시스템운영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“연 1회이상 인터넷이용자”를 “이용자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,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시장”을 “관리부서의 장”으로,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등을 신설한다”를 “등”으로 한다.

3. 특정기관, 단체,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

9. 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

제8조의 제목 “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”을 “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9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운영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”으로 하고, “민원처리에관한법률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이하 이조에서”를 “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있으되”를 “있으며”로, “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”을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접수·처리”를 “접수·처리”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)”을 “(이용자 참여 활성화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에 참여한 자

2. 홈페이지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에 참여한 자

3.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

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 지급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.운영)”을 “(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·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운영하되,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.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설치·운영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제협력. 교류. 관광유치. 통상정보”를 “국제협력·교류·관광유치·통상정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. 관리”를 “담당부서를 지정·관리”로, “개발. 유지보수 및 운영”을 “개발·유지관리 및 운영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. 관리하여야 한다”를 “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”를 “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장”을 각각 “시스템운영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시장은 제5조에 의한 담당부서 및 정보제공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”을 “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(준용)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정보통신과
입	정보통신과장	강 희 석
안	정보기획팀장	오 유 미
자	담 당 자 (연 락 처)	신 양 희 (481-2819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안산시(이하 "시"라한다)</u>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<u>지역정보화</u>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안산시</u>----- ----- ----- <u>지능정보화</u>----- ----- --.</p>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"인터넷"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.</p> <p>2. "인터넷시스템"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, 네트워크,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.</p> <p>3. "홈페이지"라 함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<u>시</u>에서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.</p> <p>4. "인터넷민원"이라 함은 <u>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</u>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이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란</u>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----- ----- <u>안산시(이하 "시"라한다)</u>-----.</p> <p>4. -----<u>이란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5. "개인정보"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.</p> <p>6. "비밀번호"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.</p> <p><신설></p>	<p>5. -----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-----.</p> <p>6. "비밀번호"란 -----.</p> <p>7. "전자민원창구"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.</p>
<p>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시장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,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지역주민과 관련된 <u>생활·산업·관광·문화</u> 등 지역정보 제공</p> <p>3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국내·외</u>에 시의 홍보</p> <p>7. <u>기타</u>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 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</p>	<p>제3조(인터넷시스템 구축·운영) ① <u>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생활·산업·관광·문화</u>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국내·외</u>-----</p> <p>7. <u>그 밖에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<u>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, 홈페이지관리부서,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.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인터넷시스템의 개발.유지 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제4항에 따른 인터넷 시스템의 위탁관리에 관하여는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.</p> <p>제4조(인터넷시스템 개선) <u>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인터넷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<u>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,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</u>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(이하 “시스템운영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관리부서(이하 “관리부서”라 한다),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(이하 “담당부서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-----</u> ----- -- <u>개발·유지 관리 및 운영</u>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제4조(인터넷시스템 개선) <u>시스템 운영부서의 장-----</u> ----- <u>이용자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홈페이지 정보관리) ① <u>관리부서의 장-----</u> ----- <u>총괄</u> <u>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 <u>시장은</u>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시장은</u> 홈페이지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게시한 자가 실명이고,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특정 기관.단체.부서</u>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</p> <p>4. ~ 8. (생략)</p> <p>9. <u>기타 연습성.오류.장난성의 내</u></p>	<p>② <u>담당부서의 장은</u>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, 정보제공 시 <u>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</u>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) ① <u>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관리부서의 장</u>----- 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특정기관, 단체, 부서</u>----- -----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연습성, 오류, 장난성의 내용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용 등</u></p> <p>10.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<u>등을 신설한다.</u></p> <p>제8조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<u>민원처리에 관한법률</u>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2조(시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시장은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의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인터넷 이용자가 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(<u>이하 이 조에서 “시장과의 대화방”이라 한다</u>)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<u>있으며</u>,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<u>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</u>에 의한 민원사무에</p>	<p>10. ----- 등</p> <p>제8조(전자민원창구의 설치·운영)</p> <p>① -----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·운영-----</p> <p>----- 「<u>민원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시장과의 대화방 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 <u>이하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있으며</u>, ----- 「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준하여 접수.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제14조(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)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, 그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접수·처리-----.</p> <p>제14조(이용자 참여 활성화)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간담회에 참여한 자 2. 홈페이지 오류 수정 및 개선사항에 참여한 자 3. 그 밖에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 <p>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등 지급 기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
<p>제15조(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.운영)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되,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.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. 교류. 관광유치. 통상정보 등을</p>	<p>제15조(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. 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국제협력. 교류·관광유치·통상정보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.</p> <p>제18조(비밀번호관리) <u>시장은 제5조에 의한 담당부서 및 정보제공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8조(비밀번호관리) <u>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에 따라</u> ----- -----.</p> <p>제19조(준용) <u>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